

도시계획법시행령(1)

도시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기반시설)

①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도로·철도·자동차정류장·광장·공원 및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 가. 일반도로
 - 나. 자동차전용도로
 - 다. 보행자전용도로
 - 라. 자전거전용도로
 - 마. 고가도로
 - 바. 지하도로
 2. 철도
 - 가. 일반철도
 - 나. 도시철도
 - 다. 고속철도
 3. 자동차정류장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화물터미널
 - 다. 공영차고지
 4. 광장
 - 가. 교통광장
 - 나. 미관광장
 - 다. 지하광장
 - 라. 건축물부설광장
 5. 공원
 - 가. 어린이공원
 - 나. 근린공원
 - 다. 도시자연공원
 - 라. 묘지공원
 - 마. 체육공원
 6. 녹지
 - 가. 완충녹지
 - 나. 경관녹지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광역시설)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쳐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중

지난 7월 1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대통령령제16,891호) 전문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제4조(공공시설) 법 제3조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철도
- 2. 항만
- 3. 공항
-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5. 운하
- 6. 광장
- 7. 녹지
- 8. 공공공지
- 9. 수도
- 10. 공동구
- 11.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12. 하천
- 13. 유수지
- 14.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15. 방화설비
- 16. 방풍설비
- 17. 방수설비
- 18. 사방설비
- 19. 방조설비
- 20. 하수도
- 21.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22.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5조(도시발전종합대책)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도시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
- 2. 기존 도시관련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범도시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육·안전·교통 및 경관분야를 말한다.

② 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 5.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공

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결과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범도시의 공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대

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2. 기타의 경우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시행
- ②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

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 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시범도시지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11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지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라 함은 경기도외의 지역에 있는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를 말한다.

제12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의 정비·보전과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지진 기타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기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사항중 당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관할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③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취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안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16조(광역도시권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도시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권의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권의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19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방의회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4.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계획

제20조(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계획총괄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21조(제안서의 처리절차)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 60일(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도시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도시계획의 입안)

-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
 - 나. 철도중 도시철도
 -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라.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 마. 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 바. 유통업무설비
 - 사. 학교중 대학
 - 아.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차.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

- 다)
- 카. 화장장
- 타. 공동묘지
- 파. 폐기물처리시설
- 하. 수질오염방지시설

제23조(도시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법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2.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 가. 지역·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공원 및 녹지를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변경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연결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및 항만에 관한 도시계획의 변경인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지역·지구·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의 생략
 -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나.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다.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라. 제41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마.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사.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생략

⑤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 또는 공사의 계속시행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방법)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총괄도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 ⑤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⑥ 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을 말한다.

제27조(실효고시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8조(도시계획의 재정비)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도

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제30조(지구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

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제31조(시기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화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시기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관망탑,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광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2.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도시기반시설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②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제33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 ①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구조
 3. 당해 공동구점용예정자의 명세
 4. 점용예정자별 공동구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착수예정연월일 및 공사준공예정연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

의 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구에의 수용)

- ①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거나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35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 ③ 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을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공동구의 관리)

-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 ②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공동구관리협의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 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37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제38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을,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관리청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및 동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 ③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 ④ 법 제40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3. 공작물

제39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0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시범도시
- 2.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4. 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된 지역
-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